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49
----------	-----

2023. 11. 27.(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이육희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3년 10월 24일

다. 회부일자: 2023년 10월 25일

라. 상정일자: 2023년 11월 20일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육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 현장 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기본방향 및 현장실습의 운영기준 등(안 제5조 ~ 안 제6조)
- 현장실습운영위원회(안 제7조)
- 현장실습의 방법(안 제8조)
-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등(안 제9조)
- 사전교육의 실시 등(안 제10조)
- 현장실습협약의 체결(안 제11조)
- 현장지도·점검 등 및 학생의 안전보장(안 제12조 ~ 안 제13조)
- 현장실습산업체의 역할 및 현장실습의 평가(안 제14조 ~ 안 제15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6조 ~ 안 제17조)
- 표창 등 및 시행규칙(안 제18조 ~ 안 제1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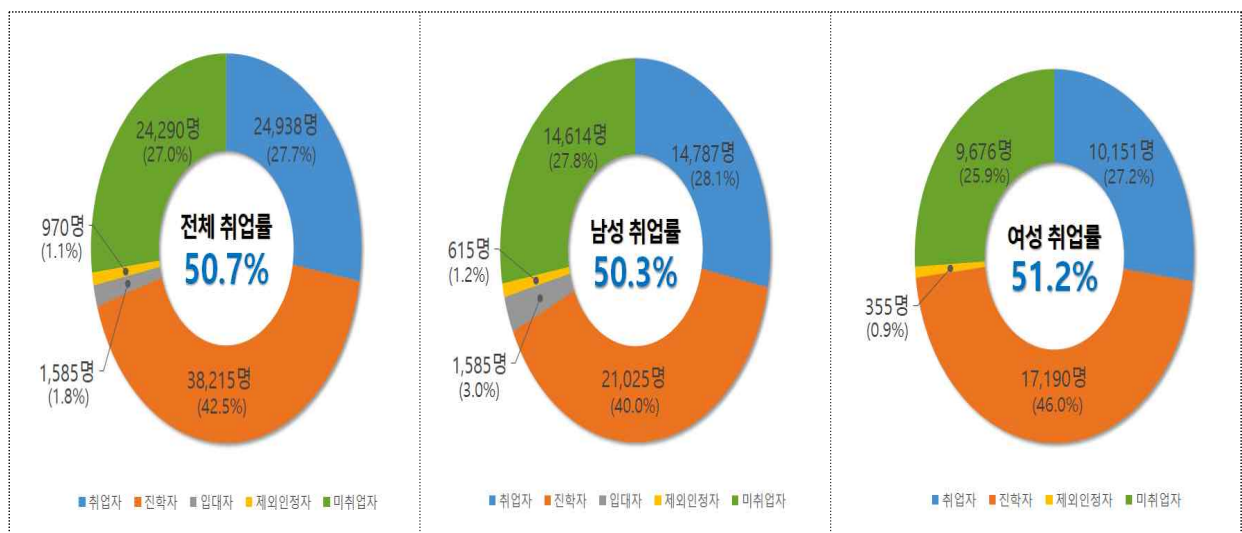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가. 조례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해 교육감의 책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 및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함.

- 현장실습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직업 체험 경험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는 일련의 교육활동임.
- 그러나, 현장실습 과정에서 기업체가 학생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노동 인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 미이행, 안전사고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충북도교육청은 매년 현장학습 산업체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 제고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임.
- 2020년 교육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전체취업률은 50.7%로 이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체험하게 되는 비율과 비례하므로 현장실습에 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사료됨.



< 직업계고 졸업 후 상황 >

< 졸업 후 상황 : 남성 >

< 졸업 후 상황 : 여성 >

- 또한, 교육부는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자 2018년 2월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발표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펼쳐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장실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직무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 우수기업의 현장실습 참여 또한 상승하는 추세임.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교육감의 책무와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여 조례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였음.
- 안 제5조 및 제6조는 조례안의 기본방향 및 현장실습의 운영 기준 등을 규정하여 현장실습을 통해 다양한 직업 체험, 현장 적응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학교장의 역할과 노력을 명시화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권 보장 및 심리검사와 상담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장학습을 운영하도록 규정함.
- 또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에 근거하여 교육감이 운영 기준 및 매뉴얼의 수립을 위해 선도기업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
- 안 제7조는 학교장이 현장실습계획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 안 제8조 및 제9조는 현장실습의 방법과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내실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전교육 실시, 현장실습협약의 체결과 현장지도·점검 등을 규정화하여 학생들의 기본 인권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실습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학생의 안전보장을 위해 「산업재해보상 보호법」 제123조에 따른 보험급여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공제급여 청구에 대한 부분과 학교장이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산업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현장실습의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운영 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고,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표창과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노동인권이 존중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최적의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높다고 할 것임.
- 본 조례안은 직업계고 학생이 안전하게 사회직장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높다고 할 것임.

- 참고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원·관리하고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이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9개³⁾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아울러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업 발굴 및 학습 중심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추계결과

(단위: 억원)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직업계고 수	26	26	25	25	25	
지원 예산	5.55	5	4.95	4.95	4.95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2023. 기준)

(단위: 명)

대상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직업계고 26교	3,583	3,058	3,082	9,723

3) 서울, 경기, 인천, 세종, 광주, 전북, 전남, 울산, 부산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2.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7조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 및 직업교육훈련생을 말한다.
3. “현장실습산업체”란 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를 말한다.
4. “선도기업”이란 현장실습산업체 중 충청북도교육청의 심의를 통해 우수한 실습 여건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은 산업체를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라 충청북도에 설치된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② 이 조례에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공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 및 발달 단계에 맞는 현장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현장실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방향) ① 현장실습은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하여 현장적응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현장실습과 취업을 구분하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시 현장실습산업체 선정과 실시 시기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 인권교육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직업적성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실습의 운영기준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과 함께 현장실습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 및 매뉴얼을 수립·개발하는 경우 현장실습산

업체의 종류별 특징을 고려하여 이미 현장실습을 받은 현장실습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운영기준 및 매뉴얼의 수립·검토, 선도기업의 심의·선정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관계 기관, 전문가, 교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선도기업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계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학생, 지역 산업계 및 취업 관계 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은 현장실습 담당교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8조(현장실습의 방법) 현장실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 교내 현장실습

나.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다.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라.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제9조(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 및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적 가치가 실현되는 현장실습이 가능한 산업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산업체를 사전 방문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현장실습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활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하여 현장실습을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한다.

제10조(사전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과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정보, 직무내용, 운영계획 등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기관·단체에서 개발한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현장실습협약의 체결) ① 단순 견학이나 체험이 아닌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생 및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함께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에 관계 법령 준수, 현장실습 담당자의 배치 등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지도·점검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보호,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문 순회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점검 시 2개월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순회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지도·점검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현장실습 담당 교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학생의 안전보장)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보험급여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한 현장실습생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실습산업체의 역할) ① 현장실습산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현장실습산업체는 현장실습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학생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산업체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현장실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현장실습산업체는 충청북도교육청과 학교의 현장실습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효율적인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실습의 평가)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현장실습 정책 수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원활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단위 학교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공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산업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새로 발굴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표창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내실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적인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학협동”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인력·시설·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 나.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 다.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실시
6. “원격직업교육훈련”이란 분리된 장소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
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제7조(현장실습) ①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의 내용·방법 및 기간·시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초·중등 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1. 삭제 <2010. 6. 29.>
2. 삭제 <2010. 6. 29.>
3. 삭제 <2010. 6. 29.>
4. 삭제 <2010. 6. 29.>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삭제 <2020. 2. 28.>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8. 삭제 <2010. 6. 29.>
9. 삭제 <2010. 6. 29.>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제출, 교육감의 해당 학교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

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제3조(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2.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3.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2.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3.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학교장은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계획: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의 반영 여부
2. 추진실적: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업무별 추진 실적
3. 그 밖에 교육감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부
- 1의2. 행정안전부
2. 보건복지부
3. 고용노동부
4. 국토교통부
5. 해양수산부
6. 삭제

7. 경찰청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예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예방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교육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예방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총괄 분과위원회
2. 학교안전교육 분과위원회
3.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분과위원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2.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방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및 사고유형별 현황
2. 학교안전사고 공제사업의 운영 현황
3. 학교 및 연수기관에서의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4. 안전교육을 위한 각종 체험시설의 운영 및 확충 현황
5.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재정 현황
6.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 안전교육 관련자에 대한 안전교육 만족도 및 요구 사항
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세부 조사항목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교내와 교외의 학교시설 및 장소에 안전표지물 등 안내문을 붙이고, 비상시의 대피 경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확인 등) ① 학교장은 매 학기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이용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5.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확인한 경우에는 매학기가 시작되는 전날까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전날까

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3 삭제

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실시하는 기관 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12. 3. 30.]

[제10조의3에서 이동 <2015. 7. 20.>]

제10조의6(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공제회를 대표하는 자 3명
2. 교직원을 대표하는 자 1명
3.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1명
4. 학교안전공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②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공제중앙회의 임원 중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를 각각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공제중앙회의 재정에 충당할 공제회의 분담금을 전년도 4월 1일 현재 시·도의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하며, 각 시·도 공제회는 매년 1월 10일까지 할당된 분담금을 공제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호의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3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했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2.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3.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도재전장관, 사기 재료로 이 빚깎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人工齒牙)]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 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4.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5.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한다.

6. 인공팔다리·틀니·안경·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의 범위 및 지급기준 등 요양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취업가능기간)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급여”라 한다)를 법 제37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거나 법 제34조제4호에 따른 유족급여(이하 “유족급여”라 한다)를 법 제39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할 경우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

1.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및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
2. 국민의 평균여명(平均餘命),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
3.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공제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피공제자가 남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①제1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②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장해가 가장 큰 부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의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제17조(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제18조(평균임금의 기준) ①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법 제34조제5호에 따른 장례비를 산정할 때의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②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임금단가통계에 따르며, 정부임금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제18조의2(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이하 “간병료”라 한다)는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중에 간병을 받은 경우일 것

2.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② 간병료는 피공제자가 실제로 간병받은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간병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한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며, 그 지급기준은 1일 당 2만원으로 한다.

제19조(위자료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체 장애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제19조의2 삭제

제20조(손익상계) ①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월급여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7에 따른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② 유족급여와 장애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간 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에 따른다.

제20조의2(위로금의 지급)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법 제40조의 2제1항에 따라 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제20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 공제회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제급여에서 제외되는 치료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진단·소견이나 법원 등의 부검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② 공제회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장애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의 과실을 상계하는 경우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급여의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당시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급여와 상계하지 않는다.

1. 피공제자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학생인 경우
2. 피공제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초등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3.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비용의 보전)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2. 법 제9조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된 자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

제22조(공제료)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공제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① 공제회는 공제가입자가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공제료 납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명령은 납부기한·납부방법·납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

제23조(기금의 용도) 법 제5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에 관하여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3.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4.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그 내용
6. 심사청구의 연월일

②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2.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사고 당시 소속 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③심사청구가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④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리·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심사위원회에서 심리·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그 사항의 심리·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28조(보정 및 각하) ①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을 때
2.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때
3.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심사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①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청구인이나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3. 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
4. 주문(主文)
5. 심사청구의 취지
6. 이유
7. 결정 연월일

③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재심사청구의 절차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①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출석하여야 할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59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출하여야 할 문서, 그 밖의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59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감정이 필요한 사항 및 그 이유(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만 해당한다)
6. 진단을 받을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5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3. 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4. 조사의 결과

제31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재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
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유무 및 그 내용
6. 재심사청구의 연월일

제33조(준용규정)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결정서”는 “재결서”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제3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3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

급과 구상권 행사

3.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4.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5.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6. 법 제43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제한
7. 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8.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전
9.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접수
10. 법 제59조에 따른 심리·결정
1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접수
12. 법 제63조에 따른 심리·재결
1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부칙 <제32549호, 2022. 3. 22.>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위한 교육 예산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업 발굴 및 학습중심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비

3. 관련조문

제1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원활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단위 학교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직업계고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나. 추계 결과

1) 현장실습 운영지원 예산액 추계

(단위: 억원)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직업계고 수	26	26	25	25	25	
지원 예산	5.55	5	4.95	4.95	4.95	

2)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2023. 기준)

(단위: 명)

대상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직업계고 26교	3,583	3,058	3,082	9,723

다. 재원조달방안: 특별교부금 및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555,000	500,000	495,000	495,000	495,000	2,540,000
보통교부금		555,000	500,000	495,000	495,000	495,000	2,540,000
세 출		555,000	500,000	495,000	495,000	495,000	2,540,000
현장실습운영지원		555,000	500,000	495,000	495,000	495,000	2,540,000
재원 조달		555,000	500,000	495,000	495,000	495,000	2,540,000
의존 재원	소 계	555,000	500,000	495,000	495,000	495,000	2,540,00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444,000	427,000	423,000	423,000	423,000	2,140,000
	특별교부금	111,000	73,000	72,000	72,000	72,000	400,000
자체 수입	소 계						0
	자체수입						0
지방채							0
기 금							0
기타(차입금, 만자예비금)							0